

## ◀ | 부록 | ▶

- [정기 총회] 주요 보고사항 및 안건
- 韓國中國學會會則
- 한국중국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안)
- 한국중국학회 논문심사규정(안)
- 『中國學報』 발행 규정(안)
- 『中國學報』 논문투고규정(안)
- 한국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안)



# 정기 총회

## 주요 보고사항 및 안건

### • 학회 현황 보고 (2018.09~2019.07.24.현재)

- 《중국학보》 발간: 86집(2018.11), 87집(2019.2), 88집 (2019.5)

### -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지원 선정(2,100만원)

: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학술회의 개최 지원(교육부: 1,921,900원/대표부: 2,369,200원)

: 충북대학교 중국학연구소(100만원)

### - 학술지 평가(2020) 대비

: [e-ISSN 등록] 국립중앙도서관 통해 신청 → 발급 완료

: [DOI 신청] 한국학술정보(KISS) 통해 신청 → 진행 중, 8월호부터 논문별 DOI 부여

: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 안내 시스템 등록] 완료

: [편집위원회 확대] 호남권, 강원권, 대구·경북권, 제주권, 부산·경남·울산권 각 1인 추가

• **학회 현황 보고** (2018.09~2019.08.11.현재)

- 회계 보고

**[총수입] ₩35,242,583**

연회비: 1,890,000원 / 심사비·게재료: 6,606,327원 / 한국학술정보: 1,449,239원 /  
예금이자: 5,917원 / 한국연구재단: 21,000,000원 / 대만교육부: 1,921,900원 /  
대만대표부: 2,369,200원

**[총지출] ₩10,714,038**

임원회의(7회): 1,862,700원 / 연회비·심사비 환불: 120,000원 / 우편요금: 13,500원 /  
지방세·소득세: 870원 / 쌍십절 축하화환: 70,000원 / 학회지 편집 지원: 2,000,000원 /  
학회 도메인 구입비: 14,850원 / 논문 심사료: 1,640,000원 / 학회지 발행: 3,201,000원 /  
국제학술대회 준비: 1,392,500원 / 한국연구재단 반납: 398,618원

• **총회 인준사항(1)**

- **학회 규정 개정**(2020년 학술지평가 대비) (\* 배포된 개정안 참고)

: "한국중국학회 편집위원, 논문심사위원 선임과 논문심사 및 논문집 발행에 관한 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심사 규정", "중국학보 발행규정" 세분화

: "논문투고규정" & "<중국학보> 논문작성규정"  
→ "논문투고규정" 통합(附則) & 저작권 이양 규정 구체화

: "연구윤리규정" → 세부내용 보충

## • 총회 인준사항(2)

### - 회비 조정

: [현행] 일괄 3만원

: [변경] 전임 3만원, 비전임 1만원

: [추가] 장기 회원 → 10년(25만원), 20년(50만원), 종신(100만원)

### - 논문게재료 조정

: [현행] 연구비 수혜 논문(30만원), 미수혜 논문(10만원)

: [변경] 연구비 수혜 논문(30만원), 미수혜 논문-전임(10만원)·비전임(0원)

## • 총회 인준사항(3)

### - 우수논문 시상

: 매년 어학·문학 1편, 사학·철학 1편 선정 → 정기총회 시상(100만원\*2명)

: [대상] 전년도 8월호~당해년도 5월호 <중국학보> 게재 논문 중 비전임 저자의 논문

: [심사] 회장 및 부회장(2인), 편집위원장 회의에서 선정

### - 분과 학술활동 지원

: 각 분과에서 별도의 학술회의 개최 시, 임원회의에서 계획을 심사하여 200만원 지원(年 1회)

: 국제학술대회와 별도로 진행 + 기타 학회와의 공동 학술회의 개최도 가능

: 주점 등 유흥업소 비용 사용 금지 외 별도의 지출 항목 제한은 없음.

단,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 필수(학회에 제출)

: [조건] 학술회의 발표 논문은 <중국학보>에 투고해야 함.

## 만찬 장소 : 우설화 043-295-5111

\* 거리: 약 2.3km

- 차: 5~6분  
- 도보: 35분

- 버스: 851번  
(CJB컨벤션센터 하차)



## 韓國中國學會會則

- 第一條 本會는 韓國中國學會라 칭한다.
- 第二條 本會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第三條 本會는 中國의 學術과 文化를 연구 소개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四條 本會의 會員은 아래와 같은 二種으로 한다.
- 一. 正會員 中國學術文化研究에 종사하는 人士
  - 二. 名譽會員 本學會의 事業을 贊助하는 有志者.
- 第五條 本會의 入會는 正會員 二人이상의 추천으로 任會員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第六條 本會는 第三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하의 사업을 실행한다.
- 一. 國際學術大會 및 講演會의 개최
  - 二. 學報 및 其他 出版物의 發行
  - 三. 會員의 연구에 필요한 便宜 및 援助 提供
  - 四. 中國의 학술문화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
  - 五. 中國 이외의 中國學 연구기관과의 연락
  - 六. 韓中 양국의 學術문화 교류
  - 七. 其他 필요한 사업
- 第七條 本會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一. 會長 一人                      副會長 二人
  - 二. 理事 필요한 수                幹事 필요한 수
  - 三. 運營委員 필요한 수
- 第八條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任員 및 運營委員會의 의장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會長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 第九條 總務理事는 事務執行에 관하여 責任을 지며 學會의 會計를 管掌한다.  
編輯理事는 『中國學報』와 『國際中國學研究』등 學會誌 發刊의 責任을 진다.  
企劃理事는 學術會議 기획에 관한 實務의 責任을 진다.  
研究理事는 學術會議 개최에 관한 實務의 責任을 진다.  
涉外理事는 對內外 連絡 實務의 責任을 진다.
- 第十條 運營委員은 會長이 委囑하는 各種 事務에 協助할 責任을 진다.
- 第十一條 本會는 監事 一人을 둔다.

第十二條 本會는 필요에 의하여 顧問을 둘 수 있다. 顧問은 국내외의 저명인사로서 本會의 발전에 유조할 자를 任員會議 승인을 얻어 會長이 이를 추천한다.

第十三條 第六條 第二項의 事業을 실행하기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構成한다.

一. 編輯委員은 編輯委員長 1인을 포함하여 語文史哲 各 分野에서 각 3인씩 總 10인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최소 5개 지역 이상의 編輯委員 分布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均衡 있게 構成한다. 編輯委員 選任 基準과 節次는 內規를 별도로 定한다.

二.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互選한다.

三. 編輯委員會는 論文審査委員을 委囑할 수 있다. 論文審査委員의 選任 基準 및 論文審査委員의 義務, 論文審査 方法과 基準, 節次는 內規를 별도로 定한다.

四. 編輯委員會는 『中國學報』와 『國際中國學研究』 등 學會 論文集을 發刊하고 論文集 發行 原則과 發行日은 內規를 별도로 定한다.

五. 編輯委員의 임기는 滿二年으로 한다. 단 전체 위원의 1/3은 再任할 수 있다.

第十四條 本會의 會長 및 監事는 定期總會에서 選出한다. 副會長 및 理事, 幹事, 運營委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第十五條 名譽會員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단 總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第十六條 定期總會는 每年 一回 실시하며 八月에 開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臨時總會는 任員會議 요청에 의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七條 總會에서의 票決은 출석 正會員 과반수로 한다.

第十八條 任員의 임기는 滿 二年으로 한다. 단 再任할 수 있다.

第十九條 任員會議의 표결은 出席 任員의 과반수로 한다.

第二十條 總會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一. 會則通過 및 修正

二. 任員 選出

三. 豫算 및 決算의 審議

四. 기타 本會 운영에 관한 重要事項

第二十一條 本會의 경비는 會費, 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써 이를 充당한다.

第二十二條 正會員은 會費의 納入의 義務를 가진다.

第二十三條 本會의 회계연도는 九月 一日부터 다음 해 八月 末日까지로 한다.

【附 則】

第二十四條 本 會則은 통과일로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의 수정은 總會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다.

第二十五條 本 學會의 해산은 會員 三分의 二 以上이 출석한 總會에서 會員 三分의 二 이 상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登錄撤回에 따른 主務官廳의 節次를 따른다.

1962.	4.	21.	創立總會에서 全會則 무수정 통과
1963.	4.	21.	第 1 次 改定
1964.	5.	25.	第 2 次 改定
1964.	11.	9.	第 3 次 改定 문교부의 지시에 의함
1974.	9.	9.	第 4 次 改定
1977.	11.	11.	第 5 次 改定
1978.	11.	21.	第 6 次 改定
1980.	3.	4.	第 7 次 改定
1994.	8.	27.	第 8 次 改定
1998.	8.	22.	第 9 次 改定
1999.	8.	21.	第 10 次 改定
2001.	8.	25.	第 11 次 改定
2014.	8.	22.	第 12 次 改定
2017.	9.	9.	第 13 次 改定

## 한국중국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안)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중국어학회(이하 '학회'로 약칭)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의 선임 기준과 절차,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위원회는 학회지 『中國學報』의 발간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논문의 투고 및 심사, 발행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약칭)은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약칭) 1인을 포함하여 語文·史·哲 각 분야에서 3인씩 총 10인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최소 5개 지역 이상의 위원 분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互選한다.
3.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기준 및 논문심사위원의 의무, 논문심사 방법과 기준, 절차는 내규를 별도로 정한다.
4. 위원회는 『중국어학보』 등 학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논문집 발행 원칙과 발행일은 내규를 별도로 정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위원회 임기 중간에 새로 추가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전체 위원의 1/3은 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기준과 절차)

1. 위원은 중국 語文·史·哲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도가 높고 연구 발표 활동이 활발한 학계의 중진으로서, 본 학회를 비롯한 유관 학회의 임원을 역임한 인사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2. 語文·史·哲 각 분야 임원들은 해당 분야 회원 가운데, 선임 기준에 부합되는 인사 중에서 위원 후보를 각각 배수 이상 추천하고, 본 학회 임원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인선을 최종 확정한다.

#### 제5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며,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나.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련
  - 라.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부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논문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1997년 8월 23일 제정

1999년 8월 21일 개정

2001년 8월 25일 개정

2003년 3월 31일 개정

2003년 10월 6일 개정

2008년 5월 10일 개정

2014년 10월 24일 개정

2019년 8월 16일 개정

## 한국중국학회 논문심사규정(안)

### 제1조(논문심사위원의 선임)

1. 語文·史·哲 각 해당 분야 논문의 논문심사위원은 각 세부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과 대외 활동이 뛰어난 권위 있는 인사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2. 편집위원회 語文·史·哲 각 분야 위원들은 해당 분야 세부 전공별로 논문심사위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인사 가운데 논문심사위원을 각각 배수 이상 추천하고, 편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인선을 확정한다. 만약에 선정된 논문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는 즉각 해당 논문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한다.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있어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4. 논문심사위원으로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1인 이상의 외국인 학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조(논문심사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즉각 본인에게 통보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최근의 전공학문 동향을 고려하여, 학자적 양식과 학문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도 엄정하게 논문심사에 임해야 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 제3조(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1.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홀수의 심사위원을 둔다.
2.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25%), ㉡내용의 독창성(25%), ㉢논리의 명확성(25%), ㉣학문적 기여도(25%) 등으로 세분한다.
3. 각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4조(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1. 논문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은 게재 적합, 79점~70점은 수정 후 당호 게재, 69점~

- 60점은 수정 후 차기 호 재심사, 60점 미만은 게재 부적합으로 정한다.
2. 논문심사위원 간의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모든 절차와 과정, 결과를 문서나 온라인 자료로 남긴다. 각 논문의 투고 · 심사완료 · 게재확정 일자 등을 잡지에 기재한다.
  4. 논문심사위원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은 편집위원회는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5. 회장은 위의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심사위원의 성명과 직함을 삭제한 후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원고의 게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제5조(부칙) :**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논문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1997년 8월 23일 제정  
1999년 8월 21일 개정  
2001년 8월 25일 개정  
2003년 3월 31일 개정  
2003년 10월 6일 개정  
2008년 5월 10일 개정  
2014년 10월 24일 개정  
2019년 8월 16일 개정

## 『中國學報』 발행 규정(안)

### 제1조(명칭)

본 학회지의 한글 명칭은 『中國學報』로 하며, 영문 명칭은 *The Journal of Chinese Studies*로 한다.

### 제2조(발행처)

본 학회(한국중국학회)를 발행처로 하며, 출판 및 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에서 시행한다.

### 제3조(논문집 발간 원칙과 발행 일자) :

1. 본 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中國學報』를 발간한다. 『中國學報』는 한국어,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中國學報』의 발간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이고, 투고논문 제출 기한은 각 발간일 기준 45일 이전으로 한다.

### 제4조(원고의 수집 및 채택)

원고의 수집과 검토, 심사, 게재 여부 결정 등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 제5조(발행비용 및 수입)

1.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관리는 총괄총무이사과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2. 학회지 발행에 대한 외부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임원회의에 일임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부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中國學報』 발행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1997년 8월 23일 제정

1999년 8월 21일 개정

2001년 8월 25일 개정

2003년 3월 31일 개정

2003년 10월 6일 개정

2008년 5월 10일 개정

2014년 10월 24일 개정

2019년 8월 16일 개정

## 『中國學報』 논문투고규정(안)

### 제1조(내용)

투고된 논문은 중국의 어학, 문학, 사학, 철학에 관한 학술적인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야에 관련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게재할 수 있다.

### 제2조(자격)

논문 투고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게만 부여한다. 단,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경우, 회원이 아니라도 게재할 수 있다.

### 제3조(형식)

1. 論文은 한글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며, 초과할 경우 초과 분량은 소정의 조판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컴퓨터 打字 時 워드 프로그램은 한글 2005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기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한글로 호환할 수 있도록 投稿者가 조치해야 한다.
4. 본문은 제목과 목차, 본문, 각주, 참고문헌, 초록 등을 갖추되, 서지의 형식은 본회 학회지의 관례에 따른다.
5. 인용문은 원전을 밝혀야 하며, 저자명, 학술지명, 논문명, 해당 권호, 발표 시기와 해당 쪽수 등의 완벽한 서지정보를 명기해야 한다.
6. 원고의 제목 및 필자의 이름과 소속, 소속학과(학부, 전공)와 직급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7.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교신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시해야 한다.
8. 國文으로 작성된 논문은 國文 및 英文으로 된 초록을 반드시 제출하고, 中文으로 작성된 논문은 中文과 英文으로 된 초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英文으로 작성된 논문은 英文과 中文의 초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9. 초록은 논문의 마지막 쪽에 작성하고, 해당 언어로 5개 이상의 주제어(Key Word)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은 <附則: 『中國學報』 논문작성규정>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4조(투고논문의 제출)

1. 투고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2.0)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논문을 제출할 때, 논문의 파일명은 '00집-주제-전공분야명'으로 한다.  
(예: 79집-중국사연구-사학)
2. 논문을 제출할 때, 투고자는 저자 정보 노출로 인한 불공정 심사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 파일명 및 내용의 저자 정보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술지의 투고논문 전체, 그리고 논문심사 결과 게재 적합으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투고자에게 심사료 및 게재료를 징수한다.

1. 투고논문의 심사료는 30,000원으로 한다.(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 투고 시에 납부)
2.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게재료는 300,000원으로 한다.
3.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는 전임 연구자의 경우 100,000원, 비전임 연구자의 경우 0원으로 한다.
4. 심사가 이미 완료되어 게재 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철회 및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게재료를 징수한다.

#### 제6조(저작권)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2. 투고자는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학회에 귀속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기타)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논문투고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019년 8월 16일 개정

附則：『中國學報』論文作成規定

(1) 분량 및 글자체

- 1) 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의 분량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글자크기와 줄간격 등은 투고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 2) 글자체: 글자체는 신명조체로 통일한다.

(2) 문단모양, 글자모양 및 편집용지 설정

구 분	문단모양				글자모양		
	좌여백	우여백	들여쓰기	줄간격	장평	자간	글씨크기
본 문	0	0	2글자	170	90	-5(한자0)	10.5
인용문	6글자	6글자	0	140	90	-5(한자0)	9.5
각 주	0	0	0	130	90	-5(한자0)	9
제목크기	논문제목	-	-	170	90	-5(한자0)	15
	장 제 목	-	-	170	90	-5(한자0)	13
	절 제 목	-	-	170	90	-5(한자0)	12
	항 제 목	-	-	170	90	-5(한자0)	11
편집용지	용지종류	용지방향	여백 주기				
	A4	보통	위 아래	왼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35	35	15		

(3) 章節의 規定

- 1) 章 : 로마자 대문자(I, II, III)로 표시한다.
- 2) 節 : 1, 2, 3으로 표시한다.
- 3) 小節 : 1), 2), 3)으로 표시한다.

(4) 本文 規定

1) 일반 규정

1. 논문은 「」(Ctrl+F10의 유니코드 문자표 FF62, FF63)로, 저서는 『』(Ctrl+F10의 유니코드 문자표 0F0854, 0F0855)로 표기한다.
2. 원전의 권명, 편명은 「」(Ctrl+F10의 유니코드 문자표 FF62, FF63)로, 서명은 『』(Ctrl+F10의 유니코드 문자표 0F0854, 0F0855)로 표기한다.
3. 인용문은 : 과 “ ”를 사용한다.( : 의 앞과 뒤는 한 칸 띄어 쓴다)

4. 영문 서적은 이탤릭체로 쓰고, 논문은 “ ”를 쓴다.

5.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漢字 사용에 대하여

1. 고유명사(人名, 地名, 年號, 書名 등)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도 주요한 概念語나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漢字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 ’를 사용한다.

3. 한글(한자) 병기는 하지 않는다.

3) 연대표시에 대하여

1. 주요 인물의 생몰 연도는 표기한다.

2. 연호는 서기로 환산하여 표기한다.

3. 연호와 연도는 붙여 쓰고, 月日은 띄어 쓴다.(예 : 康熙5년 3월 1일)

4. 연도와 페이지는 ‘-’ 대신 ‘~’를 사용한다.

(5) 引用文

1) 인용문의 글자 크기는 각주의 크기와 같게 한다.

2) 인용문은 본문보다 들여 쓰고(-4), 본문으로부터 한 칸 띄어 쓴다.

3) 본문과 한 칸 띄어 쓴 인용문에는 “ ” 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생략을 할 경우 가운데 점 6개를( ..... ) 찍어서 표시한다.

(Ctrl+F10의 문자코드 3406을 두 번 입력한다)

(6) 脚註에 대하여

1) 著者, 論文名, 書名, 發行處 등은 原文으로 기재한다.

2) 쪽수는 소문자 p.로 표시하고, 두 쪽 이상의 경우에는 pp.로 표기한다.

(p.과 pp. 뒤의 아라비아숫자는 붙여 쓴다. 예 : p.234 또는 pp.11~22)

3) ‘上揭書·同上書’는 ‘위의 책’으로, ‘前揭書·同前書’는 ‘앞의 책’으로 표기한다.

4) 동일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음’이라고 표기한다.

5) 대등한 자료가 여러 개 있을 경우 ‘ ; ’를 사용한다( ; 의 앞과 뒤는 한 칸 띄어 쓴다).

(7) 참고문헌에 대하여

1) 참고문헌은 原文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著者, 論文名, 書名, 출판지역, 출판사, 연월일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 한국중국어학회 연구윤리규정(안)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중국어학보』) 논문 게재 시, 게재 논문의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논문게재심사에 반영하고, 이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함)를 두며, 임원진 임기의 시작과 함께 별도의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약칭함)을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외에 8명의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으로 약칭함)을 둔다. 회장 및 부회장(2명), 편집위원장 등 4명은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선임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3조(위원회의 활동)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활동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개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위원장 또는 위원의 논문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별도의 위원을 임명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중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글의 게재 허용 여부.
2. 학회지에 투고·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 여부.
3. 연구윤리규정의 제정과 개정.
4.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5조(회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1.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연구윤리 교육은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총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1.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인의 저작을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간행물(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야 한다.
3.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기타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투고논문이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위의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투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통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의 사실을 통보받으면,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되어 본 학회로부터 제재를 당한 투고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의 학술 활동 및 본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8조(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사후심사)

1.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도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1) 대상 논문이 본 학술지 발행일 이전에 다른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2) 대상 논문이 타인의 저작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이미 게재된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사후심사요청서를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3. 사후심사요청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개봉한다.
4.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후심사 요청서의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 형식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해명요구서(전자문서포함)를 발송한다.
6. 해당 논문의 필자는 해명요구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다.
8.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14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사후심사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 (1) 학회 홈페이지와 다음 호 학술지에 해당 사실 및 조치 사항들을 공표한다.
  - (2) 『中國學報』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3) 해당 논문의 필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의 학술 활동 및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제9조(재심)

1.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대한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 신청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하여 5인의 재심위원을 위촉한다. 최초 판정 과정에 참여한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한다. 단, 위원장은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위원회는 재심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1차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5.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0조(제보자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로 밝히지 않고 익명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기타)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연구윤리규정은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006년 8월 10일 제정

2017년 9월 9일 개정

2019년 8월 16일 개정